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
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충청광역연합 등 「지방자치법」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함에 따라, 간선급행버스체계 실시계획의 승인, 운송사업 면허 및 운영 등에 대한 권한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권한”을 “권한[제2항에 따라 「지방자치법」 제199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(이하 “특별지방자치단체”라 한다)의 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제외한다]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시·도지사는 제2항에”를 “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”로 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에 관한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, 제9호,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부터 제22호까지의 권한을 해당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임받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위임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(권한의 위임) ① 국토교통 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<u>권한</u> 을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 통위원회에 위임한다.	제34조(권한의 위임) ① ----- ----- ----- <u>권한</u> [제2항에 따라 「지방자치법」 제199조제1항 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(이하 “ <u>특별지방자치단체</u> ”라 한다)의 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제외한 다]---.
1. ~ 22. (생략) <u><신설></u>	1. ~ 22. (현행과 같음) <u>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 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관 할하는 지역에 관한 제1항제3호 부터 제7호까지, 제9호, 제11호 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부터 제22호까지의 권한을 해당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 관은 위임받는 특별지방자치단 체의 장 및 위임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.</u>
<u>②</u> (생략) <u>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.</u>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 <u>④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</u> ----- ----- --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	
연 락 처	(044) 201 - 5121